

7.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비전임교원의 정의·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정관 및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인사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2021.6.22. 개정)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 본 대학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총장 및 교원으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교수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2. 초빙교원 :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지닌 권위를 인정받은 자가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2019.7.23.자구수정)
3. 겸임교원 :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소, 중소기업 및 권위있는 전문기관 등 강의하고자 하는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본직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직종이러함은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권위있는 전문기관 (2010.1.15.자구수정)
4. 강사 : 본 대학교 전임이 아닌 자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으로 강의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2019.7.23.개정)
5. 석좌교수 : 정부기관, 기업체,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목적성 기부금을 출연 받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초빙되어 본교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2016.2.25.호신설)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 계약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신분의 보장과 당연퇴직) ①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의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2019.7.23.개정)(2022.12.6.개정)

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겸임교원, 강사는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6. 초빙교원은 만 70세에 달하는 경우

제5조(징계)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내지 제35조 및 36조는 비전임교원에 준용한다.

제2장 명예교수

제6조(추천자격) 명예교수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로서 추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7.1. 자구수정)(2020.12.16. 개정)(2021.6.22. 개정)

1.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원 (2020.12.16. 개정)(2021.6.22. 개정)
2. 타 대학교 포함 25년 이상 재직하고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원(2020.12.16.개정)

단. 제1호 및 2호가 정하는 근속연수에 미달하더라도 본교 발전 및 교육, 학술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교원은 추천 할 수 있다.(2021.12.23.개정)

제7조(임용) 명예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0.12.16. 개정)

1. 명예교수로 추천되기 위하여는 임용예정일 2개월 이내에 명예교수 추천에 필요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해당 학부(과)장이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입학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16. 개정)
2. 삭제(2020.12.16)
3.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명예교수 임용제청을 한다. (2020.12.16. 개정)
4. 명예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해임을 제청한다.(2020.12.16. 항 추가)

제8조(구비서류) 명예교수를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총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 1부(별표1)
2. 교육 및 학술 업적 조서 1부(별표2)
3.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1부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9조(심의위원회) 삭제(2020.12.16)

제10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각종 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초빙교원 (2019.7.23.자구수정)

제11조(자격)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2.9.1. 자구수정 및 호 신설)(2019.7.23.개정)

1. 초빙교원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권위자 또는 사회적으로 공헌도 또는 인지도가 높은 자이어야 한다.(2019.7.23.자구수정)
2. 특정한 학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2019.7.23.자구수정)

제12조(임용) ① 초빙교원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2019.2.8.개정)(2019.7.23.개정)

② 임용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재계약 행위가 없으면 당연 퇴직한다.(2012.9.1. 자구수정)(2019.7.23.개정)

③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한다.(2019.7.23.개정)

1. 임용기간
2. 급여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출서류) ① 초빙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교원활용계획서 1부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② 초빙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1. 교원임용지원서 1부
2. 교육 및 연구실적목록 1부
3. 학력증명서(석사, 박사)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4조(복무)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무를 수행한다.(2010.1.15.자구수정)(2019.7.23.자구수정)

1.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2019.7.23.개정)
2.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및 논문지도 (2012.9.1.자구수정)
3.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제15조(처우) ① 초빙교원에게는 강사와 동등한 강의료를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초빙교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9.7.23.자구수정)

② 제1항의 수당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겸임교원(2010.1.15.자구수정 및 조항수정)

제16조(자격)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로한다.(2019.7.23.개정)

1.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을 말하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대학 교원자격 기준을 갖춘 자(2019.7.23.자구수정)
2. 강의하고자 하는 분야(과목)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단, 직종이라 함은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소, 중소기업 및 권위 있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3. 본직 기관장의 동의를 얻고 주당 9시간 이내(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2019.7.23.자구추가삽입)

제17조(임용) ① 겸임교원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2019.7.23.개정)

② 임용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재계약 행위가 없으면 당연 퇴직한다.(2019.7.23.개정)

③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한다.(2019.7.23.개정)

1. 임용기간
2. 급여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2(제출서류) ① 겸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교원활동계획서 1부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② 겸임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1. 교원임용지원서 1부
2. 교육 및 연구실적목록 1부
3. 학력증명서(석사, 박사)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재직증명서 및 기관장동의서 각 1부
5.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8조 (복무)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2019.7.23.개정)
2.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및 논문지도(2012.9.1.자구수정)(2019.7.23.자구수정)
3.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제19조(처우) ① 겸임교원에게는 강사와 동등한 강의료를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겸임교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0.1.15.자구수정)(2019.7.23.자구수정)

② 제1항의 수당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강사(2019.7.23.자구수정)

제20조(자격) ① 강사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019.7.23.개정)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과목의 특성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를 통하여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2019.7.23.개정)

③ 학문후속세대 임용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2019.7.23.개정)

제21조(임용) ①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2019.7.23.개정)

② 신규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신규임용 이후 총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2019.7.23.개정)

③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한다.(2019.7.23.개정)

1. 임용기간
2. 급여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출서류) ① 신규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1. 교원임용지원서 1부
2. 교육 및 연구실적목록 1부
3. 학력증명서(석사, 박사)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23조(강의시간) ①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2019.7.23.개정)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2019.7.23.개정)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2019.7.23.개정)

제24조(임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하여야 한다.(2019.7.23.개정)

제25조(시행세칙) 강사의 처우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2019.7.23.개정)

제6장 석좌교수

제26조(자격) ① 석좌교수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특정 전문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여야 한다.(2019.7.23.자구수정)

제27조(임용) 석좌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금이 계속 출연되거나 대학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 임용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연구실적목록
4. 추천서

제28조(처우) ① 석좌교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석좌교수 보수가 외부기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복무) ① 석좌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좌교수는 학기 당 1개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단 총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①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외부기관이나 사업체의 출연 또는 개인의 기탁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임용된 석좌교수는 교비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출연된 재원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제3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겸임교수규정, 초빙교수규정, 시간강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